

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신탁업자 : 신한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동부뉴델타-히어로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]
 종류형 펀드 : 동부뉴델타-히어로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혼합]Class A, C-E
 나. 분류 : 증권집합투자기구
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2.05.03 ~ 2013.05.02
 라. 집합투자업자 : 동부자산운용(주)
 마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: 동부증권, 우리은행, 한국외환은행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-07-16	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u> 2. ~ 5. (생략)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u> 2. ~ 5. (종전과 동일)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에 의거 회계기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50 억원 이하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(1)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- (2)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- (3)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(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- 공정함
- (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- 적정함
- (6)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- (7)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생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(8)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동부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(<http://www.dongbuam.co.kr>) 및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상기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